

수급권자 선정기준 및 보장수준 한눈에 보기

*자세한 내용은 꼭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과 상의하세요!

[표-0] 2022년 및 2023년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 50%)	'22년	97만2406	163만43	209만7351	256만540	301만2258	345만3502
	'23년	103만8946	172만8077	221만7408	270만482	316만5344	361만3991
주거급여 (중위 47%)	'22년	89만4614	149만9639	192만9562	235만5697	277만1277	317만7222
	'23년	97만6609	162만4393	208만4364	253만8453	2,97만5423	339만7151
의료급여 (중위 40%)	'22년	77만7925	130만4034	167만7880	204만8432	240만9806	276만2802
	'23년	83만1157	138만2462	177만3927	216만386	253만2275	289만1193
생계급여 (중위 30%)	'22년	58만3444	97만8026	125만8410	153만6324	180만7355	207만2101
	'23년	62만3368	103만6846	133만445	162만289	189만9206	216만8394

수급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수급을 신청하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위[표] 급여별 선정기준보다 낮아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재산기준은 아래 [표-1]와 같으며 재산기준을 초과하는 재산가액에 대해서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표-2]의 소득환산율이 적용어 월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표-1] 재산기준 (단위: 만원)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근로능력 가구	의료급여	5,400	3,400	2,900
	생계주거 교육급여	6,900	4,200	3,500
근로무능력 가구	의료급여	8,500	6,500	6,000
	생계주거 교육급여	10,000	7,300	6,600
부양의무자가구		22,800	13,600	10,150

[표-2] 재산의 소득환산율

구분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수급(권)자	1.04%	4.17%	6.26%	100%
부양의무자	1.04%		2.08	

재산의 경우 가구원 특성에 따라 적용되는 특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또는 신문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하셔서 확인하세요.

부양의무자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에 더해 주소를 달리하고 있는 가족들의 소득과 재산을 보고있습니다. 교육, 주거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기준이 완전 폐지되었지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는 부양의무자기준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자산이 9억, 연봉이 1억(월 834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수급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거나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수급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가구원수 등에 따라서 소득 재산 기준이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또는 신문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하셔서 확인하세요.

2023년 바뀌는 보장수준 -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표-3] 2023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단위: 만 원/월)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광역시 세종시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	33.0	(+0.3)	25.5	(+0.2)	20.3	(+0.2)	16.4	(+0.1)	
2인	37.0	(+0.3)	28.5	(+0.2)	22.6	(+0.2)	18.5	(+0.2)	
3인	44.1	(+0.4)	34.1	(+0.3)	27.0	(+0.2)	22.0	(+0.2)	
4인	51.0	(+0.4)	39.4	(+0.3)	31.3	(+0.3)	25.6	(+0.2)	
5인	52.8	(+0.4)	40.7	(+0.3)	32.3	(+0.3)	26.4	(+0.2)	
6인	62.6	(+0.5)	48.2	(+0.4)	38.2	(+0.3)	31.3	(+0.3)	

생계급여는 수급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를 최대로 보장받으며[표-0], 주거급여는 기준임대료[표-3]와 실제 내고 있는 임대료 중 적은 쪽의 금액을 보장받으며 수급가구의 소득에 따라서 자기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수급권자의 권리향상과 빈곤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해 함께 합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노조사회복지지부, 공무원노동조합, 공익인권법재단공간,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난민인권센터, 노년유니온,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내가만드는복지국가, 동자동사랑방, 민달팽이유니온,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빈곤네트워크(대구),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부산반빈곤센터, 빈곤사회연대, (사)참누리,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서울시사회복지사업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해방열사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평화주민사랑방,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홈리스행동

발행 |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20-28, 1층

전화 | 02-778-4017

홈페이지 | antipoverty.kr

페이스북 | www.facebook.com/antipovertykrl

이메일 | antipovertykr@gmail.com

수급권자신문

2022.08

내년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 5.47% 고물가 행진 속 낮은 인상률 결정, 빈곤문제 해결 못해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에 사용되며, 생계급여 수급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중위소득’이란 전국민을 100명으로 가정할 경우 소득 순으로 중간, 즉 50번째에 있는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조사하여 발표한다. ‘기준중위소득’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한 여러 제도의 선정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계청의 자료를 기초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매년 발표하는 값이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기획재정부 차관 등 6개 부처 차관관과, 전문가 및 공익위원을 포함하여 총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7월 2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을 결정했다.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5.47% 인상된 512만1080원, 1인 가구 기준으로 6.84% 인상된 207만7892원으로 결정되었다[아래 표].

[표] 2022년 2023년 기준중위소득 비교 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2022년	2023년
1인가구	1,944,812원	2,077,892원
2인가구	2,360,085원	3,456,155원
3인가구	4,194,701원	4,434,816원
4인가구	5,121,080원	5,400,964원
5인가구	6,024,515원	6,330,688원
6인가구	6,907,004원	7,227,981원

2023년도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교육급여는 50% 이하로 올해와 동일하며, 주거급여는 47% 이하로 올해에 비해 1% 상향되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62만3368원 이하이면 생계급여를, 83만1157원 이하이면 의료급여를, 97만6609원 이하이면 주거급여를, 103만8946원 이하이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4면 참조].

5.47%의 인상률, 물가인상률에도 미치지 않아

2023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 5.47%은 기본증가율 3.57%에 추가증가율 1.83%가 반영된 수치이다. 추가증가율은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는 데 사용하는 공식 통계 자료를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하고, 1·2인 가구 지원 강화 차원으로 가구 균등화 지수를 변경한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최종증가율 5.47%에 대하여 ‘그간 코로나 19 등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해 기본증가율을 하향 조정해온 과거 2년과는 달리 2020년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이후 최초로 원칙을 반영하여 결정한 결과로써도 그 의미가 있다’고 자평하였다.

그러나 이번 기준중위소득 인상률 5.47%는 나날이 치솟는 물가를 고려하면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7월 소비자동향’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하여 6월에 6.0%를 기록한 데 이어 7월에 6.3%를 기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6% 이상을 기록한 것은 IMF 시기였던 1998년 이후 23년 8개월만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올해 7월에는 작년 7월에 비해 생활물가지수(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144개 품목 기준)는 7.9%, 신선식품지수(해산물, 채소, 과일 등 계절 및 기상조건에 따라 가격변동이 큰 55개 품목 기준)는 13%, 농축수산물물은 7.1%, 전기, 가스, 수도 요금은 15.7% 상승했다.

서울 지역 기준 작년 7월에 비하여 올해 7월 자정면은 5,462원에서 6,300원, 칼국수는 7,462원에서 8,385원, 냉면은 9,577원에서 10,423원으로 모두 1000원 가량씩 올랐다(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한 끼에 1000원 가량이 오르면 똑같은 식사에도 한 달에 9만원이 더 드는데, 이번 기준중위소득 결정으로 실제 1인 가구가 받는 생계급여는 58만원에서 62만원으로밖에 오르지 않은 것이다.

물가도 오르고 경제도 어려워진다면? 정부는 빈곤층의 주머니부터 염려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규모별로 산정한다.”(제6조의2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 따르면 지급과 달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크지 않지만, 기획재정부는 기준중위소득 결정 시마다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통계 자료보다 낮은

값으로 정할 것을 종용한다. 하지만 경제가 어렵다면 그로 인하여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계층의 삶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하지 않을까.

하루빨리 법에 따라 통계 자료에 기반하여 기준중위소득을 정상화하되, 근본적으로는 기준중위소득 대비 30%, 40%라는 턱없이 낮은 비율의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을 높여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제8조 제2, 3항)고 규정하고 있다. 즉, 법은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을 ‘30% 이상’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줄곤 법에서 정한 ‘하한’을 ‘최대치’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위기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빈곤층이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및 관련 부처는 그저 복지를 최대한 줄이려는 지금까지의 관행에서 벗어나 실제 사람들의 생활을 사람다운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가족이 아닌 나라가 복지 문제 해결하라

‘부양의무자 기준’은 가족에게 일정 수준 이상 재산이나 소득이 있을 경우, 그 가족을 ‘부양의무자’로 간주하고, 복지 제도를 신청하기보다 가족으로부터 먼저 부양을 받으라는 제도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단계적으로 폐지되어 현재 교육급여와 주거급여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수급권자 당사자의 삶에 가장 필수적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는 기준 완화에 그치거나 여전히 견고한 장벽으로 남아있어, 복지 제도가 필요한 이들이 신청을 위한 발걸음조차 떼지 못하게 하도록 만들고 있다.

수급 신청조차 포기하는 사람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아닌 기준 완화는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변화가 아니라 제도적 걸림돌이 되는 모습이다. 만약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에게 부양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수급신청자들은 일단 수급신청을 위해 동사무소에 방문하자마자 부양의무자 존재 유무에 대한 질문을 받으니 위축되기 십상이다. 한 수급 신청자의 제출할 필요가 없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요구받기도 했으며, 또 다른 경우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기 위해 오랜 기간 연락하지 않은 병든 어머니를 찾아 부양의무를 포기해달라고

부탁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지키지 않았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 후보 단일화를 이룬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 역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이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올해 1월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로 지난 4년간 수급자 인원은 77만 8000명이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부양의무자기준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과중한 의료비 지출에 치료를 포기하는 의료급여 사각지대는 무려 73만 명이다.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복지의 기본이자 시작점

가족에게 복지를 전가하려는 정책은 비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올해 서울시는 청년 주거정책인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임대부문 입주자 선발 기준에 앞으로 부모 소득을 함께 보겠다고 밝혔다. 부양의무자기준과 비슷한 걸림돌이 다른 제도에도 보이는 것은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복지 제도가 되어야 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조차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통해 기본적인 사회보장 책임마저 개인과 가족에게 떠넘기는 부조리를 하루빨리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민달팽이유니온 사무국장 가원>

수급자격 박탈되는 빌라 명의대여 범죄 급증, 주의하세요!

A씨는 마포구 소재 임대아파트에서 동생, 아버지와 함께 살던 중 난데없이 SH로부터 집을 비우라는 퇴거명령을 받았다. A씨 명의 빌라가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알아보니 몇 달 전 A씨가 모르는 사람에게 50만원을 받고 주민등록증을 빌려주었는데, 그 명의로 빌라 1채가 생긴 것이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B씨는 생활비에 쪼들리다 지인이 50만원을 주겠다는 말에 명의를 빌려주었다. 몇 달 후 B씨는 구청으로부터 B씨 명의로 주택이 확인되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어느 날 갑자기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 A씨와 B씨. 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이들의 명의를 최근 성행하고 있는 깡통전세 사기에 이용된 것이다. 그 과정은 이렇다. 신축빌라의 건축주, 그리고 부동산 컨설팅 업자는 빌라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를 놓고 세입자를 구한다. 신축빌라는 매매시세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입자는 터무니없이 비싼 전세란 것을 알지 못한 채 전세계약을 체결한다. 그렇게 높은 전세보증금을 챙긴 건축주, 그로부터 고액의 수수료를 받은 부동산 컨설팅 업자는 이제 그 빌라의 명의를 ‘바지 집주인’에게 넘긴다. 2년 뒤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자력이 없는 수급자, 노숙인, 장애인 등 저소득층의 명의를 ‘바지 집주인’으로 이용되는 것이다.

A씨와 B씨는 빌라를 소유하게 되었지만 그 빌라 가격을 상회하는 전세를 안고 있다. 이런 빌라는 처분할 수도 없다. 빌라 시세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은 주택을 살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2년 뒤 그 빌라의 세입자들은 A씨와 B씨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것인데 A씨와 B씨는 그만한 돈이 없다. 깡통전세 사기로 인해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수급자들은 수급자격을 잃는 것은 물론 거액의 전세보증금 빚까지 떠안게 되는 것이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는 최근 깡통전세 사기에 명의가 도용되어 임대주택에서 쫓겨나거나 수급자격이 박탈된 사람들의 상담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새로운 유형의 명의범죄가 등장한 만큼 정부에서는 하루빨리 범죄에 노출된 수급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수급자 스스로도 자신들의 명의를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하자.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전가영>

고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한 취약계층 지원, 8월부터 자활근로사업 지원단가 인상

지난 7월 8일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발표된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방안’에는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한 자활근로사업 지원단가 인상이 발표되었다. 고용지원 추진과제 후속 조치로 발표된 이번 자활근로사업 지원단가 인상은 8월부터 시행하고 3% 인상될 예정이다.

[표] 2022년 자활근로 지원 단가(단위: 원/원)

구 분	시장진입형/ 기술 자격자	사회서비스형/ 기술 자격자	근로유지형
지급액계	58,660/62,660	51,350/55,350	30,120
급여단가	54,660/58,660	47,350/51,350	26,120
실 비	4,000	4,000	4,000
표준소득액(월)	1,421,160	1,231,100	679,120
비 고	1일 8시간, 주 5일		1일 5시간, 주 5일

[표] 2022년 8월 3%인상 시 자활근로 지원 단가(단위: 원)

구 분	시장진입형/ 기술 자격자	사회서비스형/ 기술 자격자	근로유지형
지급액계	60,300/64,300	52,770/56,770	30,900
급여단가	56,300/60,300	48,770/52,770	26,900
실 비	4,000	4,000	4,000
표준소득액(월)	1,463,800	1,268,020	699,400
비 고	1일 8시간, 주 5일		1일 5시간, 주 5일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전지영>